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11. 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1. 11.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신 귀 철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이 일부개정 시행(2001. 4. 27)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기타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일부 조항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1. 4. 27일 일부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 조례안에서 시민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인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시민단체가 우리 구에 있나?
- 답변요지(신귀철 감사담당관) : 단체별 각 지부가 있음.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신귀철 감사담당관)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된 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제 출 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이 일부개정 시행(2001. 4. 27)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현행 조례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

(안 제2조제1항)

나. 기타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일부 조항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함. (안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3. 개정근거 : 공직자윤리법(2001.1.26 법률 제6388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9.15~10.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1.10.12)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 ~ ③(생략)</p>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생략)</p> <p>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5.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p> <p>2. ~ 4.(생략)</p> <p>③~④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p> <p>1.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8조제12항 -----</p> <p>3.~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현행과 같음)</p> <p>②----- ----- -----</p> <p>1. 법 제8조제7항----- 법 제8조제12항 ----- -----</p> <p>2. ~ 4.(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